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7. 24. 문정복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7.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정복 의원)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

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선영)

양질의 약사 배출과 의료인 등 유사 전문 자격제도와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시행(2025. 4. 8.)된 바 있음.

「약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의 인증과 무관하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최근의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현행법에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법률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약학교육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2022년)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이미 해당 기관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인증을 받은 바 있음.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37개교) 중 36개교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인증을 받았으며, 경성대학교는 2025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

개정 「약사법」 제3조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약사자격면허가 연계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인해 평가·인증대상 대학 수나 평가기준 및 내용, 절차 등의 변화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은 공통적으로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문분야이므로, 현행대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순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 약학을 규정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